
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통지서

1. 성명: _____ 2. 생년월일: _____

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교육과정	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)
교육기간	20 . 1. 1. ~ 12. 31.
교육장소	한국도로교통공단 ○○지부 교육장
신청방법	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원하는 일시에 교육 신청

-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,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

직인